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5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일산VIP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대표성명	김 미 리 (인)	연락처	031)915-8883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275번길 72(탄현동)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 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____년 ____월 ____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____일 납부하기로 한다.(____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0,590	56,220	51,82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 120,000원 추가 3인실 120,000원 추가		
	식재료비(1식)	3,500원		
	간식비(1회)	1,500원		
	이/미용료등	1회 10,000원추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화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7.5%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12, 8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의 해지

1.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 은 ‘갑’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 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 과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에게 제출하고 ‘을’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 (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 은 ‘갑’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 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 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 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 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 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 이나 ‘병’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 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 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 과 종사자들에 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

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 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 에게 제공하며, ‘갑’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 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 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 ④ ‘갑’ 은 ‘을’ 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년월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대표 김 미 리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보 호 자 : (인)

서 약 서

입소자 성명 :

입소자 생년월일 :

본인은 상기 입소자 ()의 보호자로서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입소자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입소자 가족으로서 긴밀한 협조 관계 및 가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반 규칙의 위반 또는 의무를 이행치 않아 받게 되는 퇴소 조치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 (인)

동 의 서

본인은 () 어르신의 보호자로서 현재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나, 여건상 편안히 모시고자 시설 보호를 원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 _____ (인)

임 종 서 약 서

1. 본인은 ()어르신의 보호자로서 어르신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요양원에서 임종처치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임종 및 간호처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비용은 입소비와 함께 상계 처리함을 설명 들었습니다.

(임종 처치비 : 10 만원)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 _____ (인)

신체구속지침 및 동의서

1. 억제대란 어르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로써 일반적으로 손목, 가슴, 허리, 하지 부위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억제용 장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억제대 사용목적은 어르신 본인, 가족 및 케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치료에 필요한 튜브, 주사 드레싱 등을 어르신이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경우

2) 치매 등으로 전도(넘어짐)의 위험이 있거나 어르신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해 정신이 심하게 불안정(심한 불안, 초조, 약물 부작용등)하거나 주·야간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3. 억제대 사용이 어르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 질 경우 케어자나 의료담당자가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억제대를 사용하며 어르신에게 억제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신속히 제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위 설명을 잘 들었으며 억제대 사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_____

보호자(대리인): _____ (인)

낙상위험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공동 케어시스템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 일상생활 중 낙상이나 넘어짐, 사고의 발생률이 높고 그로인해 다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저희 일산VIP요양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으며, 개인 케어 시스템이 아닌 공동 케어 시스템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어르신을 돌보다 보니 케어에 한계가 있어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르신의 낙상이나 넘어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잘 들었으며 부득이하게 부상이나 골절 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허용되는 배상 범위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단, 단독보행 등 어르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_____ (인)

보호자(대리인): _____ (인)

낙상 예방 지침서 및 확인서

1. 기본적으로 요양원 입소 시 보호자를 동반한다.
2. 담당선생님의 허락 없이 보호자의 임의적인 환자 이동을 금하게 한다.
3. 보행 운동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와 함께 이동 한다.
4. 두통, 어지러움, 골불유합, 골다공증,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환자는 이동시 더 주의 하여야 한다.
5. 환자를 바퀴 달린 의자나 낙상에 위험이 있는 의자 등에 앉히지 않는다.
- 6. 고령, 치매 등 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이동에 주의 또는 금한다.**
7. 전동 매트나 경사대에서 치료 시 테이블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 하여 치료한다.
8. 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환자의 실내화 혹은 운동화의 착용시킨다.
- 9. 환자 이동시 이동카나 휠체어를 사용 이동한다. (보행가능여부 판단)**
10. 이동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환자의 상태에 따라 2인 혹은 3인이 함께 이동한다.
- 12. 환자의 무리한 이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13. 목발이나 지팡이의 높낮이는 정확히 맞춘다.
14. 보행훈련 장비는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위의 설명을 잘 들었으며 위 사항을 기반으로 낙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_____ (인)

보호자(대리인): _____ (인)

단체복 착용 여부에 대한 동의서

일산VIP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하여 _____어르신
의 상태가 아래와 같이 기록한 ①, ②, ③, ④에 해당될 경우 단체복 착용
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에 의하여 개인 옷을 착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① 혐 오 감 : 다른 수급자들에게 피해(노출 등)를 줄 수 있는 옷.
- ② 배 회 성 : 배회성이 강하여 요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
으신 분
- ③ 특별사유 : 피부질환, 와상 등으로 인하여 개인 옷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간호기록지 또는 욕구평가기록지에 기록여부)
- ④ 시기나 질투심 : 다른 수급자에게 시기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옷.

년 월 일

이 용 자 : _____ (인)

보호자(대리인): _____ (인)

CCTV 촬영 동의서

일산VIP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및 위급상황의 재빠른 대처를 위하여 각 방마다 CCTV를 설치하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공지 받았으며 CCTV 촬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_____ (인)

보호자(대리인): _____ (인)